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1093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영, 김민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권지혜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118,124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B이 중소기업은행과 D은행에 대하여 각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경부터 B과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① 2018. 6. 19. 소외 E1)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21. 10. 22.과 같은 달 25. 합계 5,000만 원을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와 B은 2021. 10. 2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21.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① 2021. 11. 9.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② 2021. 12. 7.부터는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도 연체하였다.

마. B의 대출원리금 미상환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4. 20. ① 중소기업은행에게 74,243,081원을, ② F은행에게 19,241,824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4.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G(중복),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23. 4. 25. 별지2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내지 12호증, 을 제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9일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③ 원고가 2022. 4. 20. B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실제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① B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② B이 2021. 12. 31.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B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에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이 B의 채무 변제력 회복을 위한 신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피고가 B와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해왔고, B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5년경부터 B와 수십 차례 금전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자신이 B에게 1회에 대여한 금전이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는 B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이 2020. 9. 1.경 이후로는 피고에게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B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의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118,124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범용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건축물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6층 호 79.5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 60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602분의 43.231

별지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배 당 표

사 전 부동산강제경매
(공탁) (경매5계)

배 당 할 금 액	금	213,503,187
명 세	매 각 대 금	213,459,990
	지면이자 및 절차비용	0
	전경대보증금	0
	매각대금이자	43,197
	향교보증금	0
집 행 비 용	금	3,262,768
실제배당할 금액	금	210,240,419
매각부동산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건축물 호	
채 권 자	주식회사 	
금 액	채 권 이 자	838,142,571
	비 용	0
	계	152,122,295
	배 당 순 위	1
이 유	근저당권자	2
	근저당권자 (2019.09.27.자 제60910호)	근저당권자 (2021.10.22.자 제92289호)
채 권 최 고 액	165,000,000	200,000,000
배 당 액	152,122,295	58,118,124 ✓
잔 여 액	58,118,124	0
배 당 비 율	100 %	29.54 %
공 탁 번 호 (공 탁 일)	금 계 호 (금 계 일)	금 계 호 (금 계 일)
2023. 4. 25.		
사법보좌관		경유나

1) 피고는, E이 B의 친구이고, B의 요청으로 E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